

2021년 5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직무대리 전영수(054-912-0622), 연구관 임규옥(054-912-0627)

제공일: 5월 6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식물검역, “디지털 증명서 시대” 개막

- 5월 10일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(ePhyto) 운용 개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검역본부, 5월 10일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(ePhyto) 운용 시작
 -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기존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 증명서(ePhyto)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을 미국과 운용 시작
 - 그동안 우리나라는 종이증명서 교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·변조, 통관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¹⁾)의 전자 식물검역증명서(ePhyto)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, 지난해부터 미국과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처음 상용화
-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‘검역본부’)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(ePhyto)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 -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분실,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.
 - 또한,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.

1)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(IPPC) :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52년 UN 산하에 설립되어 18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

□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(ePhyto)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.

* 2011년(서울)과 2015년(인천) ePhyto 국제 심포지엄 유치, IPPC 허브 시범사업 참여(2017년) 등 ePhyto 개발 초기부터 적극 참여

○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,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.

○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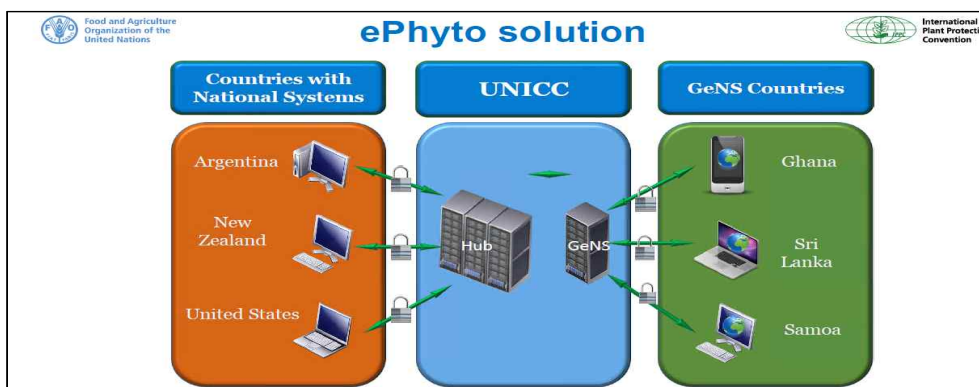
□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(1~10일)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,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(직무대리)은 “미국과 ePhyto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”이라며, “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 전망했다.

붙임 1

전자식물검역증명서(ePhyto) 개요

- **(개발 배경)** 종이검역증명서 발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, 증명서 위·변조 방지, 신속 통관, 양자 간 추진 중인 증명서 전자교환의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지불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참여 지원 등을 목적으로, IPPC는 2014년 4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 지침을 국제기준으로 채택 후 글로벌 허브를 통한 교환 시스템(ePhyto)을 구축
 - 201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와 수정·보완을 통하여 2020년에 허브를 모든 국가에 개방
- **(정의)** 종이문서로 작성·발급하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국에서 IPPC가 정한 표준화 전자양식에 따른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작성·발급하여 IPPC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하여 수입국 식물검역기관 서버로 직접 송부
- **(관련 근거)** ① (국제기준) ISPM 12(Phytosanitary Certificates, 식물위생증명서, 2011 개정) 부속서 1: 전자 증명, 표준 XML 체계와 교환 방식에 대한 정보(2014)
② (국내기준) 식물방역법 제8조(식물검역증명서 등)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·포장(이하 “식물등”이라 한다)을 수입하려는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 식물검역증명서(이하 “검역증명서”라 한다)를 첨부·전송하여야 한다.
- **(운영 방식)** 종이검역증명서의 출력 없이 IPPC가 UN ICC(국제컴퓨팅센터)에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ePhyto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
 - 우리나라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는 IPPC 표준양식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,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
 - 국내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IPPC/UN ICC가 개발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GeNS(General ePhyto National System)을 이용,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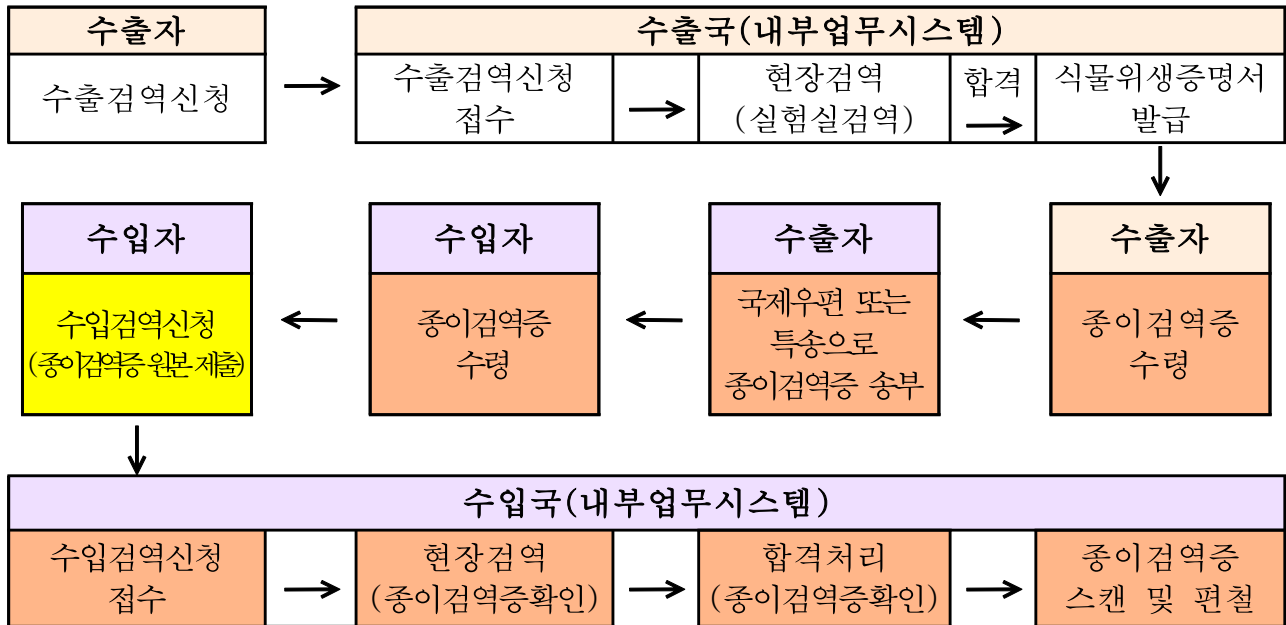


- **(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)** UN ICC가 개발한 IPPC 허브는 많은 양의 자료가 동시에 접속되어 시스템 마비에 대비한 crush 테스트를 지속하여 하루 2천만 개 이상의 자료가 접속되어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음.
 - UN ICC는 UN 기구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, 운영하는 국제기구로, 여러 국가의 서버(태국, 이탈리아, 제네바 등)에 모든 정보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, 항공기 관련 DATA를 관리하고 있는 가장 안정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.

붙임 2

종이검역증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업무절차 비교

□ 종이검역증 발급 절차(수출국 발급~수입국 제출 소요기간: 1~10일 이상)



□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(수출국 발급 ~ 수입국 도착 소요시간: 발급 즉시)

